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1-015-164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1. 9. 8.

주 문

1. 피심인 청주시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9,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 나. 피심인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다.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권고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 정보처리자이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 에 따른 이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대표자	설립 일자	직원 수	자산('19년 기준)	주요서비스

Ⅱ.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조사('21.3.24.~3.26.)를 통해 피심인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1. 행위 사실

- 가.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
- 1) 피심인은 '시스템'에서 전자상거래 기록의 법령상 보관기간인 5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있다.
 - 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 1) 피심인은 '홈페이지 시스템'의 경우 ①개인정보취급자(관리자)의 권한 '부여·변경·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있지 않으며, ②개인정보취 급자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지 않고 하나의 계정을 개인정보취급자 3명 이 공유하고 있고, ③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에도 해 당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구현하고 있 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2) 피심인은 ①'홈페이지'및' 시스템'의 경우 접속기록 중'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를,' 시스템'의 '수행업무' 중'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지 않으며, ②' 홈페이지'및' 시스템'의 경우 접속기록을 월 1회 점검하고 있지 않고, 내부관리계획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시 반드시 사유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경우 다운로드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7. 29.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1. 8. 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 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호는 ①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제1호),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 ③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제3호), ④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제4호), ⑤개인정보 보안프로그램의 설치·갱신(제5호), ⑥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제6호)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이하 '고시'라 함)에 정한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시 제5조제1항·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 다.(고시 제5조제3항)
-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시 제5조제4항)
- 3) 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 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 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시 제5조제6항)
- 4)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고시 제8조제1항)
- 5)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고시 제8조제2항)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의무(보호법 제21조)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

1)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보호법 제29조)를 소홀히 한 행위

- 2) 개인정보처리자는 ①개인정보취급자(관리자)의 권한 '부여·변경·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②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고,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③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및 고시 제5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한 것이다.
- 3) 개인정보처리자는 ①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 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②개인정보의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하고,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나,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9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 고시 제8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별표2)'과 태료의 부과기준'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2021. 1.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 로 각 위반행위별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과태료 1,200만원을 적용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단위 : 만원)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마. 법 제21조제1항 ·제39조의6(제39조의14에 따라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0	1,200	2,400
자.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 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 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 우	보! 세 /노소	600	1,200	2,4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등)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위반에 대하여는 위반상 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0%인 60만원을 가중하고,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위반행위별 각 목 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0%인 60만원 을 가중하여, 총 120만원의 과태료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 의 감경기준(▲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제21조제1항 위반에 대하여는, 정보주체에게 피해자 발생하지 않은 등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시정완료한 점, 조사기간 중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30%인 180만원을 감경하고,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하여는, 정보주체에게 피해자 발생하지 않은 등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위반행위를 시정완료 및 시정 중에 있는 점, 조사기간 중 일관되게 행위사실을인정하면서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 기준금액의 30%인 180만원을 감경하여 총 360만원의 과태료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 가중.감경을 거쳐 총 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2. 시정조치 권고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 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 나. 피심인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권고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제66조 및「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정)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시정조치 권고를 받은 사실과과대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한 내용 및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순번_	위반행위를 한 자	위빈	·행위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					
	명칭	위반조항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				
1		법 제21조제1항	개인정보 파기의무 위반	2021.9.8.	시정조치 권고,				
		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	2021.9.8.	과태료 부과 960만원				

V.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 조(과태료)제2항제6호 및 제64조(시정조치 등)제4항, 제66조(결과의 공표)에 따라 과태료, 시정조치 권고,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권고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 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 다.

2021년 9월 8일

- 위원장 윤종인 (서명)
- 부위원장 최 영 진 (서 명)
- 위 원 강정화 (서명)
- 위 원 고성학 (서명)
- 위 원 백대용 (서명)
- 위 원 서종식 (서명)
- 위 원 염흥열 (서명)
- 위 원 이희정 (서명)
- 위 원 지성우 (서명)